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6. . . (제 회)	

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제출자	국무위원 홍윤식 (행정자치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「도서개발 촉진법」 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,
- 「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」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

3. 주요내용

- 가. 「도서개발 촉진법」 제14조(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
- 나. 「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」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및 도서개발 실무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이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,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 등에 대한 조항 삭제

4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생 략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: 예정

라. 기 타: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 (2) 입법예고: 예정
 (3) 규제심사: 예정

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도서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및 도서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.”를 “사람으로 구성한다.”로 한다.

제16조제4항2호 중 “소속공무원 및 도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”를 “소속공무원 중에서”로 한다.

제18조는 삭제한다.

제19조는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16년 4. 28.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 (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	제15조 (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①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 정부차관 · 교육부차관 · 국방부 차관 · 행정자치부차관 · 농림축 산식품부차관 · 보건복지부차 관 · 환경부차관 · 국토교통부차 관 · 해양수산부차관 · 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<u>사람을 당연직 위 원으로 하고, 도서를 관할하는 시 · 도지사 및 도서분야 등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.</u>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으로 구성한다.</u>
②~⑤ (생 략)	②~⑤ (현행과 같음)
제16조(도서개발실무위원회)	제16조(도서개발실무위원회)
①~③ (생 략)	①~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도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	2. -----

현행	개정안
<u>의 소속공무원 및 도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</u>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8조(수당) <u>도서개발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제19조(위원의 임기) <u>도서개발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.</u>	----- <u>소속공무원 중에서</u> -----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	
연 락 처	(02) 2100 - 4363